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

나. 여성기업 지원 관련 안전 발생 시 위원회 소집 및 소집사유 종료 후 위원회 해산 규정 신설

다. 기타 문구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일부반영)

※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라 해촉 규정 내 임기조항 삭제가
필요하다는 의견 반영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제외대상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4. 11. 14. ~ 12. 4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경제실 경제정책과 정경연 (☎ 2133-5256)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5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여성기업 지원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
- ⑥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
- 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”을 “서울신용보증재단”으로, “경영지도”를 “경영지도 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) ① ~ ③ (생략)	제8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	5. ----- ----- 사람
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⑤ <u>위원회는 여성기업 지원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, 소집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.</u>
⑥ <u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	⑥ <u>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</u>
1. <u>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</u>	
2. <u>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</u>	
3. <u>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</u>	

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

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
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
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
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
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
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
금의 융자

2.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
신용보증 및 경영지도

3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④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
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

⑦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
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
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
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
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

-----.

1.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
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
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
지원사업

2. 서울신용보증재단-----
----- 경영지도 사업

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
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제25조제1항-----

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
이하인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
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
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-----.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‘여성기업지원위원회 비상설화’ 등 위원회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비용이 미발생

4. 작성자 : 경제정책과 행정6급 정경연(02-2133-5256)